

본인확인서(개인/개인사업자용)

▶ 본 서식은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등에 따라 요구되는 필수서식입니다. 아래의 <작성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객 정보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	

2. 해외거주자 여부 확인			
가. 다음 중 해당란에 체크(V)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 (V)
①	한국 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며, 다른 국가에 세법상 거주지국이 없습니다.		☐
②	한국 이외에 세법상 거주지국이 있습니다.		☐
나. 위 가.에서 ②에 표기한 경우 귀하의 영문성명, 영문주소, 조세목적상 거주지 및 납세자번호(TIN)등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문성명	성(Sur name)	명(Given name)	
세법상 거주지국 주소(영문)			
세법상 거주지국(영문)		납세자번호 (TIN)	납세자번호 미제출 사유 (미국은 미제출 불가)
1.			☐ 미발급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2.			☐ 미발급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3.			☐ 미발급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납세자번호 미제출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사유를 기재해 주십시오.			

3. 본인확인			
■ 본인은 본 확인서를 작성함에 있어 기재 내용에 오류 또는 허위가 없음을 확인하며,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 60일 이내에 귀사에 통보하겠습니다. ■ 본인확인서의 제출을 부당하게 거부·지연하는 행위, 허위 정보를 기입하는 행위, 기재 내용에 변경이 있음에도 이를 귀사에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를 지연하는 행위, 허위 정보를 통보하는 행위 등은, 귀사의 실사의무와 보고의무를 방해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귀사에 의해 국세청에 신고될 수 있음을 충분히 설명되고 이해하였습니다.			
		년	월 일
작성자	본인	성명	서명(날인)
대리인	법정대리인 ☐ (친권자/미성년후견인)	성명	서명(날인)
	기타 대리인 ☐	성명	서명(날인)
※ 계약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만 대리인 싸인 필요.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만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대리인 싸인 불필요			

작성 방법	
1. 고객 인적사항 고객님의 성명, 생년월일, 거주지 주소, 전화번호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해외 거주자 여부 확인 (1) 세법상 거주지국은 해당 국가의 세법에 따라 거주자로 판단되는 국가를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주소(살고 있는 곳)를 기준으로 하지만 국가별로 다소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컨대, 미국, 아르헨티나, 아랍에미리트 등 일부 국가는 해당 국가의 국적이 있으면 주소와 관계 없이 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합니다. 금융기관은 세법상 거주지국의 판단에 관하여 의견을 제공할 수 없으므로,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시거나 기획재정부 또는 OECD 포털(OECD automatic exchange of information)의 안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가.에서 ②에 표기한 고객님께서서는 나.의 영문 성명, 세법상 거주지국 주소(영문), 세법상 거주지국과 납세자번호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납세자번호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미제출 사유를 선택하기기 바라며, 미제출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세법상 거주지가 미국인 경우에는 반드시 납세자번호(SSN(Social Security Number),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Individual Tax Identification Number))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3. 본인 확인 본인 또는 대리인이 작성일 및 성명을 기재 후 서명 또는 인감을 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확인서(법인용)

▶ 본 서식은 상호주의에 따른 정기적인 금융정보의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에 따라 요구되는 필수서식입니다. 뒷면의 <작성 안내>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객 정보

단체명	(한글)	(영문)
주소(본점 주소)	*외국은 영어로 작성 바랍니다.	전화번호

2. 기본 사항

한국 이외에 세법상 거주지국이 있습니까?	☐ 예 (☞ 3-1항 및 3-2항 작성) ☐ 아니오
자금세탁방지법령상 실소유자 확인 대상으로서, 실소유자에게 한국 이외의 세법상 거주지국이 있습니까?	☐ 예 (☞ 3-2항 작성) ☐ 아니오
모두 "아니오"로 답한 경우에는 4. 본인확인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3-1. 세법상 거주지국

세법상 거주지국 및 납세자번호			납세자번호 미제출 사유
1	*외국은 영어로 작성 바랍니다.	납세자번호	☐ 미발급 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2	*외국은 영어로 작성 바랍니다.	납세자번호	☐ 미발급 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3	*외국은 영어로 작성 바랍니다.	납세자번호	☐ 미발급 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미제출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3-2. 법인 유형

▶ 뒷면의 <영어 해설 및 분류 코드>를 참고하여, 법인 유형에 체크(V)하고, 관련 정보를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①-1	미국법인 또는 미국기관입니까?	☐ 예 (☞ ①-2항) ☐ 아니오 (☞ ②-1항)
①-2	특정 미국인에 해당합니까?	☐ 예 (☞ ②-1항) ☐ 아니오 (☞ 제외 미국인 코드 : [] ☞ ②-1항)
②-1	금융기관입니까?	☐ 예 (☞ ②2항 작성) ☐ 아니오 (☞ ③항)
②-2	GIIN이 있는 금융기관입니까?	☐ 예 (☞ GIIN : □□□□□□□□□□□□□□□□□□□□□□, ☞ ③항) ☐ 아니오 (☞ 예외 금융기관 유형 코드 : [] ☞ ③항)
③	수동적 비금융단체 여부	☐ 예 (☞ 별지 『실질적 지배자 확인서』 작성 ☞ 4. 본인확인) ☐ 아니오 (☞ 능동적 비금융단체 코드 : [] ☞ 4. 본인확인)

4. 본인확인

■ 본인은 본 확인서의 내용에 기재 내용에 오류 또는 허위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본인은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된 내용에 대한 본인확인서를 제출하겠습니다.

■ 본인은 <작성 안내>를 읽고 그 내용에 따라 본 확인서(필요한 경우 별지 포함, 이하 같음)를 작성하였으며, 기재된 내용을 바탕으로 본인의 관련 정보가 과세당국에 보고되고 거주관할권 등에 제공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법인명		년 월 일
대리인	성명	서명 (인) (직위:)

<작성안내>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하 "국조법") 제31조는 금융회사가 고객의 조세 목적상 거주지에 관하여 일정한 정보를 수집하여 보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된 정보는 관련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관할권 과세당국과 교환·공유될 수 있습니다.
- ▶ 이 확인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는 국조법 시행령 제47조에 근거한 「정기 금융정보 자동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에 따르며, 아래 <용어 해설 및 분류 코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 확인서는 귀 법인의 판단에 따른 조세목적상 거주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되는 것이므로, [당사]가 기재되는 내용에 관하여 안내 하여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용어 해설 및 분류 코드>

세법상 거주지국	☐ 세법상 거주지국 : 소득 관련 세법상 거주자로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관할권(국가 또는 지역)을 의미하며, 해당 관할권의 세 법에 따라 판단됩니다. 조합(파트너십)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기구로서 세법상 거주지를 갖지 않는 경우에는 실질적 관리장소 가 위치한 관할권의 거주자로 취급 ☐ 납세자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하며, 세법상 거주지국이 국내인 경우 사업자 등록번호를 의미
① 미국법인 또는 미국기관	☐ 미국인 : 1) 미국 내에서 설립되었거나 미국 연방법 또는 주법에 따라 설립된 파트너십 또는 법인 및 2) 일정한 요건을 갖춘 신탁 또는 3) 미국의 시민권자거나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유산재단 ☐ 특정미국인 : 미국법인으로서 아래와 같은 FATCA 보고 제외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코드를 기재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특정미국인에 해당 A. 주권상장법인 B. 위 항목에 서술된 회사로써 미국 연방세법 제1471(e)(2)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 확장된 관계회사그룹의 일원인 회사 C. 미국, 미국정부소유기관, 미국정부대행기관 D. 미국 주, 미국령 및 그들의 정치적 하부조직 및 이의 소유기관 또는 대행기관 E. 미국 연방세법 제501(a)조에 정의된 면세기구 또는 미국 연방세법 제7701(a)(37)조에 정의된 퇴직연금 F. 미국 연방세법 제581조에 정의된 은행 G. 미국 연방세법 제856조에 정의된 부동산투자신탁 H. 미국 연방세법 제851조에 정의된 규제 대상 투자회사 또는 1940년 투자회사법(15 U.S.C. 80a-64)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등록된 법인 I. 미국 연방세법 제584(a)조에 정의된 공동투자신탁펀드 J. 미국 연방세법 제664(c)조에 의하여 조세가 면제되는 신탁 또는 미국 연방세법 제4947(a)(1)조에서 정의하는 신탁 K. 유가증권, 상품, 파생금융상품(명목원금계약, 선물, 선포, 옵션 포함)의 딜러로서 미국연방법 또는 주법에 의하여 등록된 자 L. 미국 연방세법 제6045(c)조에 정의된 중개인
② 금융기관	☐ 금융기관 : 예금기관(예: 은행), 수탁기관(예: 증권회사), 투자단체 및 특정보험회사 ☐ GIIN(Global Intermediary Identification Number) : 미국 국제청이 발급한 식별번호. 금융기관으로서 GIIN이 없는 경우에는 아래의 분류코드 중 하나를 기재 A 적용면제 수익적 소유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단체 B 이행간주 금융기관 : 지역은행, 지역고객 기반 금융기관, 소규모 은행 등 C 비참여금융기관 : 제외 근거가 없는데 GIIN이 없는 금융기관
③ 수동적 비금융단체	☐ 금융기관이 아닌 경우 : 아래에 열거된 법인 유형(능동적 비금융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분류코드를 기재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수동적 비금융단체로서 실질적 지배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A 상장법인 : 주식이 하나 이상의 증권시장에서 정기적으로 거래되는 회사 B 상장법인의 특수관계단체 : 특수관계단체는 둘 중 하나의 단체가 다른 단체를 지배하거나, 두 단체가 공동으로 지배받는 형태 의 회사 C 정부기관-국제기구 : 정부기관은 (국내외)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그 하위조직을 말하며 이들이 전적으로 소유하는 단체 포함 D 능동적 일반법인 : 직전 연도 총 수입의 50% 미만이 수동적 수입이고, 직전연도의 보유자산 중 50% 미만이 수동적 수입을 창출하거나 수동적 수입의 창출을 위하여 보유된 단체. 수동적 수입은 1) 이자, 배당, 연금, 사용료와 임대료(능동적 사업에서 발생하는 것 제외), 2) 금융자산의 거래 또는 외환거래로 인한 차익, 3) 스왑으로 인한 순이익, 4) 현금가치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금액을 의미 E 특정 공익법인 : 소득세 및 법인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단체로서, 관련 법령상의 추가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 F 신설법인 : 아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 않고, 과거의 사업운영 이력도 없으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자본을 투자하고 있는 경우로서, 최초 설립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단체 G 청산중인 법인 : 과거 5년간 금융기관이 아니었으며, 그 자산을 청산 중이거나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지속 또는 재개하려는 의도로 사업을 재편 중인 단체 H 비금융 지주회사 : 비금융단체의 실질적으로 모든 활동이 금융업이 아닌 거래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하나 이상의 자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전부 또는 일부)하거나 그러한 자회사에 대하여 자금조달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경우. 다만, 단체가 투자펀드로서의 기능을 하거나 또는 그러한 기능을 표방하는 경우는 제외함 I 전속금융회사 : 비금융단체가 주로 금융기관이 아닌 특수관계단체와 또는 그러한 특수관계단체를 위하여 자금조달 및 헤징 거래를 하고, 특수관계 단체가 아닌 단체에 대하여는 자금조달 및 헤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해당 특수관계단체 집단이 금융업 이외의 사업을 영위하여야 함 J 미국령 법인 : 미국령에서 설립되고 그 단체의 모든 소유자가 그 미국령의 실제 거주자인 경우 K 직접보고 NFFE : NFFE(비미국 비금융단체)이면서 IRS에 미국인 관련 정보를 직접 보고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GIIN을 보유하는 것 L 피후원 직접 보고 NFFE : NFFE(비미국 단체)의 후원기관(sponsoring entity)이 해당 NFFE를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고 미국인 관련 정보를 보고하기로 협약을 체결하고 GIIN을 보유하는 것
	☐ 금융기관인 경우 : 비참여관할권에 소재하는 펀드(다른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투자단체)에 한하여 수동적 비금융단체로 분류 ☐ 투자단체 : 1) 고객을 위하여/대신하여 금융 관련 자산을 투자, 운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주된 영업으로 하는 단체 및 2) 예금기관, 수탁기관, 특정보험회사 및 위 1) 유형의 투자단체에 의하여 관리되고 총 수입이 주로 금융자산의 투자, 채투자 또는 거래로부터 발생하는 단체(예: 집합투자기구). ☐ 비참여관할권 : 1) CRS에 따른 금융정보를 교환하기로 하는 조세조약을 체결할 것과 2) OECD에서 공표된 목록에서 확인될 것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이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관할권



실질적 지배자 확인서

▶ 본 서식은 FATCA 및 CRS 목적상 수동적 비금융단체에 해당하는 법인고객의 실질지배자를 확인하기 위한 서식입니다.

①	영문성명 (대문자)	성(Sur Name)		생년월일
		명(Given Name)		
	세법상 거주지국 주소(영문)			
	실질적 지배자 유형		☐ 소유주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 ☐ 선임관리자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	
			☐ 그 밖의 소유주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배) ☐ 기타 유형 (아래 표 참고)	
	세법상 거주지국(영문)		납세자번호(TIN)	납세자번호 미제출 사유 (미국은 미제출 불가)
	1			☐ 미발급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2			☐ 미발급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미제출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영문성명 (대문자)	성(Sur Name)		생년월일
		명(Given Name)		
	세법상 거주지국 주소(영문)			
	실질적 지배자 유형		☐ 소유주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 ☐ 선임관리자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	
			☐ 그 밖의 소유주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배) ☐ 기타 유형 (아래 표 참고)	
	세법상 거주지국(영문)		납세자번호(TIN)	납세자번호 미제출 사유 (미국은 미제출 불가)
	1			☐ 미발급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2			☐ 미발급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미제출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영문성명 (대문자)	성(Sur Name)		생년월일
		명(Given Name)		
	세법상 거주지국 주소(영문)			
	실질적 지배자 유형		☐ 소유주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 ☐ 선임관리자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	
			☐ 그 밖의 소유주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배) ☐ 기타 유형 (아래 표 참고)	
	세법상 거주지국(영문)		납세자번호(TIN)	납세자번호 미제출 사유 (미국은 미제출 불가)
	1			☐ 미발급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2			☐ 미발급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미제출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④	영문성명 (대문자)	성(Sur Name)		생년월일
		명(Given Name)		
	세법상 거주지국 주소(영문)			
	실질적 지배자 유형		☐ 소유주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 ☐ 선임관리자 (법인·단체의 대표자 등)	
			☐ 그 밖의 소유주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배) ☐ 기타 유형 (아래 표 참고)	
	세법상 거주지국(영문)		납세자번호(TIN)	납세자번호 미제출 사유 (미국은 미제출 불가)
	1			☐ 미발급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2			☐ 미발급국가 ☐ 제출불요 국가 ☐ 미취득	
미제출 사유가 '미취득'인 경우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 실질적 지배자 유형 (기타)

신탁 (trust)	신탁 이외의 법적 기구 (legal arrangement other than trust)
a. 위탁자 (settlor)	f. 위탁자(settlor)와 동등/유사한 자
b. 신탁관리인 (trustee)	g. 신탁관리인(trustee)과 동등/유사한 자
c. 수탁자 (protector)	h. 수탁자(protector)와 동등/유사한 자
d. 수익자 (beneficiary)	i. 수익자(beneficiary)와 동등/유사한 자
e. 기타의 방법으로 지배하는 자 (other controlling person)	j. 기타의 방법으로 지배하는 자 (other controlling person)

⑤	귀 법인(단체)에 실질적 지배자인 비거주자가 없는 경우 아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실질적 지배자 중에 비거주자가 없음 * 비거주자는 대한민국 이외에 세법상 거주지가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	---



해외거주자 및 납세의무자 여부 확인서

본 확인서는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및 “정기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조세조약 이행규정” 등에 따라 작성이 요구되는 필수 서식입니다.

I. 고객 인적사항

1. 성명	
2. 국적	

II. 조세목적상 해외 거주자 및 납세의무자 확인(해당사항에 체크(✓) 하세요)

미국 납세의무자 (시민권자, 영주권자, 기타 조세목적상 미국 거주자)에 해당하거나, 조세목적상 한국 이외에 해외 거주지(= 해외 납세의무 국가 또는 지역)가 있습니까?

☐ 해당사항없음 ☐ 해당함

- ※ 미국 납세의무자에 해당하거나, 조세목적상 한국 이외에 해외 거주지가 있는 경우 '본인 확인서'를 반드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국적이 한국이 아닐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함'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 허위로 작성할 경우 해당 신고내용에 대한 책임은 고객님 본인에게 있습니다.
- ※ '조세목적상 거주자'라 함은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국가나 지역을 말합니다.

III. 본인 확인

- 본인은 위 기재 및 관련자료 제출 내용이 진실, 정확 및 완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만일 정확한 내용을 제공하지 않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귀사가 본인 명의의 계약을 FATCA 및 CRS 보고대상 계약으로 인식하여 국세청에 보고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위 자필기재사항 및 제출자료의 내용에 변동이 있을 경우, 30일 이내에 귀사에 알려야 함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본인확인서의 기재 및 관련자료 제출을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발생 가능한 일체의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계약자 ☐	성명	서명(날인)
	수익자 ☐		
대리인	법정대리인 (친권자/미성년후견인) ☐	성명	서명(날인)
	기타 대리인 ☐	성명	서명(날인)